

신종 감염병 관리

송재동

개발상임이사·심사평가연구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12월 처음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이는 1968년 인플루엔자A(H3N2)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A(H1N1)에 이어 세 번째이다.

2020년 3월 31일 현재 세계 206개국에서 77만 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3월 31일 기준 총 누적 확진자수는 9,786명으로,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가족 내 전파로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 확산은 아직도 진행형이다.¹⁾

정부는 2020년 1월 20일 해외유입(중국 우한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상향하였고²⁾, 1월 27일 지역사회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경계’로 위기단계를 격상시켰다. 이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감염 급증세에 따라 2020년 2월 23일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으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검색일자: 2020.03.31.)

2) 보건복지부. “검역단계에서 해외유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확인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대응”. 보도자료. 2020.1.20.

또한 2020년 2월 26일에 코로나 3법³⁾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 가지 법률안의 의결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을 금지하고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시설에 충분한 물적자원 공급과 더불어 의료시설과 장비가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진에게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와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ITS)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민안심병원⁴⁾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격리실 입원료, 진단검사 등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 수가 및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공적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스크 판매정보 데이터를 제공하여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코로나19 임상데이터 공개를 위해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감염병의 확산 예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미래 감염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제14권 2호에서는 ‘신종 감염병 관리’를 주제로 국가차원의 신종 감염병 관리 현황과 향후 보건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의 논의들이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체계적이고 준비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X

3)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4)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하여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 체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